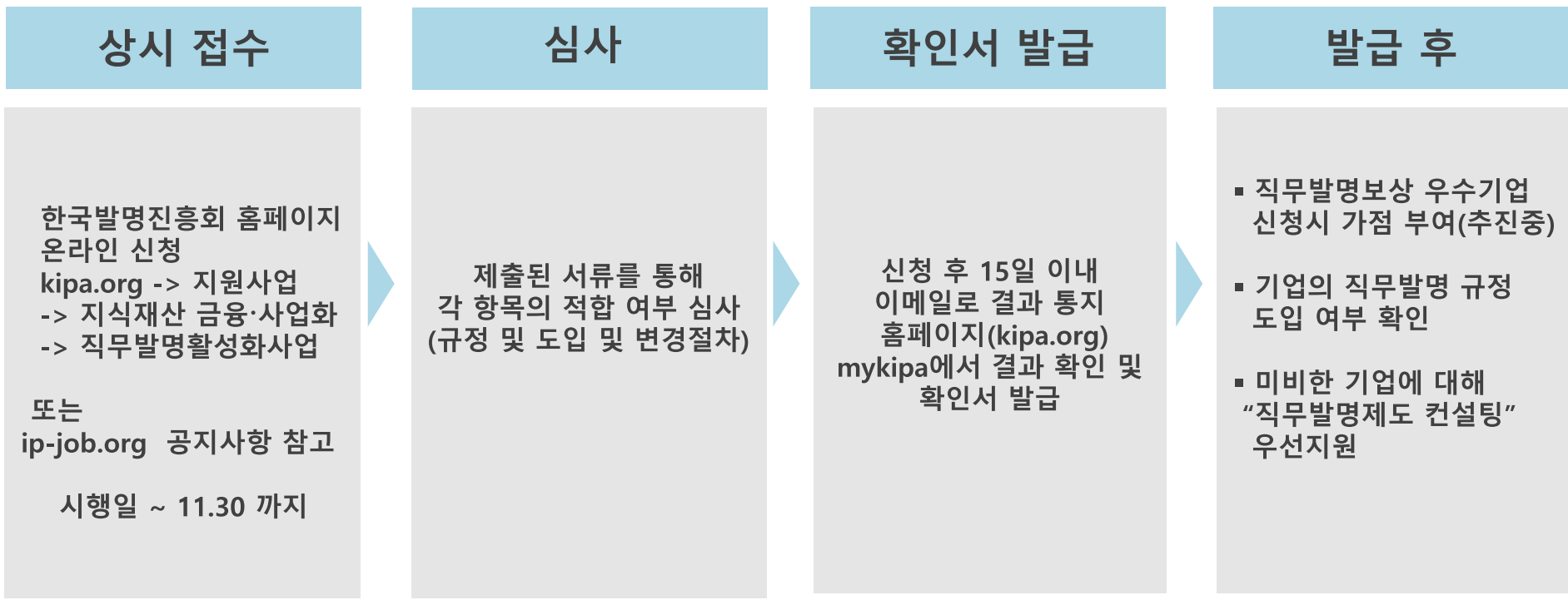


# 직무발명제도 규정 도입 여부 확인 신청 방법 안내

# ○ 직무발명제도 규정 확인 운영절차



## ○ 직무발명제도 규정 도입 여부 확인 신청 요건

- 직무발명제도 규정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

☞ 직무발명제도 홈페이지(ip-job.org)자료실의 “직무발명제도 표준모델”, “직무발명제도 업무메뉴얼” 참고

## ○ 직무발명제도 규정 도입 여부 확인 신청시 필요 제출 서류

직무발명에 관한 규정
직무발명제도 규정 도입 및 변경 절차

☞ 직무발명제도 홈페이지(ip-job.org)자료실의 “직무발명제도 표준모델” 및 “직무발명제도 업무메뉴얼” 참고

- **직무발명에 관한 규정**은 직무발명에 관한 **승계절차 및 보상규정, 심의위원회 규정** 등을 포함한 **규정을 말함**
- **직무발명제도 규정 도입 및 변경 절차**는 **발명진흥법 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2** 근거에 따라 **절차를 이행**하였음을 **증빙하는 서류를 말함**
- 신청일 기준 **15일** 이내 심사완료되며, 신청자(신청시 기재한 이메일)에게 심사결과 통지

# ○ 신청 순서

## 1. 온라인 신청서 작성

- ① **www.kipa.org 홈페이지 로그인**  
**※ 개인회원가입이므로, 대표이사의 계정으로 로그인 권장**
- ② **지원사업**  
 -> 지식재산금융·사업화  
 -> 직무발명활성화사업  
 -> 직무발명제도 규정 도입여부 확인 신청  
**※ ip-job.org (직무발명제도 홈페이지) 공지사항으로도 신청가능**
- ③ **기업 정보 및 담당자 정보 입력(STEP 1, 2 작성)**
- ④ **STEP 3 서류 업로드**  
**※ 중소기업-중견기업 증빙서류, 직무발명제도 규정은 필수 서류 제출임**
- ⑤ **신청서 제출**  
**※ 임시저장 상태에서 수정 가능->mykipa->신청서 관리**  
**※ 신청서 최종 제출 이후 수정 불가**  
**※ 신청완료 건에 대해서만 심사 진행**

## 1) 사업신청 클릭

[홈](#) · [지원사업](#) · [지식재산금융·사업화](#) · [직무발명활성화사업](#) · [직무발명 규정 도입 여부 확인](#)

### 직무발명활성화 사업

사업개요	사업공고	사업문의
사업신청(우수기업인증제)	사업신청(직무발명제도 컨설팅)	직무발명 규정 도입 여부 확인

## 2) 신청 페이지 팝업창이 생성됨 (팝업 설정 확인)

\* 표시는 필수 입력사항입니다.

※ 업력명, 사업자등록번호, 대표자는 '임시저장'시 제도 필수 입력사항입니다.  
 ※ 업력명, 사업자등록번호를 사업자등록용 기준으로 정확히 표기하여 주십시오. (연동서 발급시 기재 항목)

회원ID *	회원ID를 입력하여 주십시오. <input type="text"/>		
신청자성명 *	<input type="text"/>		
업제정보	<input type="checkbox"/> 업제정보 자동입력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업제정보를 기존 신청내역에서 자동으로 입력하실 경우 선택해주세요		
업력명 *	<input type="text"/>	대표자 *	<input type="text"/>
사업자등록번호 *	<input type="text"/>	법인등록번호	<input type="text"/>
업종 대분류 *	<input type="checkbox"/> 농업, 임업 및 어업 <input type="checkbox"/> 광업 <input type="checkbox"/> 제조업 <input type="checkbox"/> 전기, 가스, 증기 및 공급 공급업 <input type="checkbox"/> 수도, 하수 및 폐기물 처리, 원료 재생업 <input type="checkbox"/> 건설업 <input type="checkbox"/> 도매 및 소매업 <input type="checkbox"/> 운수 및 항공업 <input type="checkbox"/> 숙박 및 음식점업 <input type="checkbox"/> 정보통신업 <input type="checkbox"/> 금융 및 보험업 <input type="checkbox"/> 부동산업 <input type="checkbox"/> 전문,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<input type="checkbox"/> 사업지원 서비스업 <input type="checkbox"/> 공공행정,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<input type="checkbox"/> 교육 서비스업 <input type="checkbox"/>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<input type="checkbox"/> 예술,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서비스업 <input type="checkbox"/> 임의 및 단체, 우회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<input type="checkbox"/> 거주내 고용활동 및 일시 방문되지 않은 자가 소비 생산활동 <input type="checkbox"/> 무예 및 레크리에이션		
업종 상세분류 *	<input type="text"/> (02_0202)	주 생산품	<input type="text"/>
유형 *	<input type="checkbox"/> 중소기업 <input type="checkbox"/> 중견기업 <input type="checkbox"/> 개인 <input type="checkbox"/> 청년창업기업 <input type="checkbox"/> 초기창업기업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청년창업기업(연간 대표자가 연 3회에 한하여, 당해 3년 미만인 중소기업 또는 중소기업임을 증명하는 자) <input type="checkbox"/> 초기창업기업(연간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 2호에서 말하는 기업)	종업원 수	<input type="text"/> 0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'0'을 제외한 숫자로 입력해주세요. <input type="checkbox"/> 예시(5000)
회사 전화번호 *	<input type="text"/> 02- <input type="text"/> - <input type="text"/>	회사 팩스번호	<input type="text"/> 02- <input type="text"/> - <input type="text"/>
주소 *	*법인사무소(총상주소) 기업 <input type="checkbox"/> 주소가 동일합니다. <input type="text"/> <input type="text"/> <input type="text"/> 동,층,호수 <input type="text"/> <input type="text"/> <input type="text"/> 내내주소(상대입장)		
주소 *	<input type="text"/> <input type="text"/> <input type="text"/> 동,층,호수 <input type="text"/> <input type="text"/> <input type="text"/> 내내주소(상대입장)		

## ○ 신청 순서

### 2. 첨부파일 업로드 (STEP 3)

① 중소기업·중견기업 입증서류  
(\*신청일 기준 유효 서류)

② 직무발명보상에 관한 규정

※ 직무발명제도 홈페이지(ip-job.org) 자료실->표준모델 참고

③ 직무발명제도 규정 도입 및 변경 절차

※ 직무발명제도 홈페이지(ip-job.org) 자료실->업무메뉴얼참고

④ 신청서 제출완료

### 3) 제출서류 업로드( STEP 3)

#### 직무발명 규정 도입여부 확인 신청서 [STEP3]

No.2

※ 첨부파일 제출 가능 용량은 20MB 이하입니다.

※ 첨부파일 제출 가능 확장자는 (jpg, jpeg, png, bmp, gif, hwp, hwpX, pdf, zip, xls, xlsx)만 가능합니다.

①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증명서류 [D테스트 2.pdf](#) [수정](#)

② 직무발명보상에 관한 근무규정사본 [D테스트 4.pdf](#) [수정](#)

③ 직무발명 규정에 따른 절차의 준수 증명서류 \* [D테스트 2.pdf](#) [수정](#)

제출서류

「발명진흥법」 제11조 및 「직무발명 규정 도입여부 확인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운영요령」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직무발명 규정 도입여부 확인에 지원합니다.

2025.02.08

신청자 : 김정수

## ○ 직무발명제도 규정 도입 여부 확인 심사 세부 사항 안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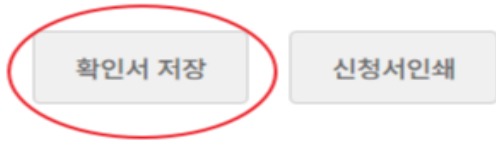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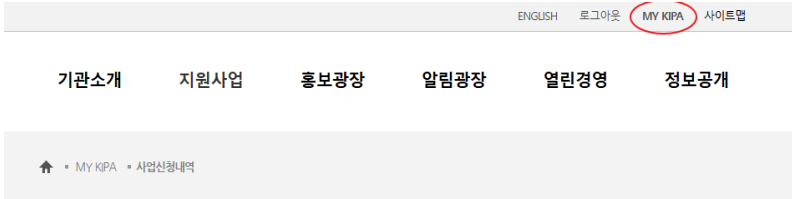
### ① 직무발명에 관한 규정

구분	평가항목	적합	미흡
직무발명에 관한 규정	직무발명의 권리 승계 절차		
	보상형태, 보상액 등 보상기준 및 지급방법		
	직무발명심의위원회 구성·운영방법 및 심의(이의신청, 분쟁의 조정, 중재) 사항		

### ② 직무발명제도 규정 도입 및 변경 절차

구분	평가항목	적합	미흡
직무발명제도 규정 도입 및 변경 절차	직무발명제도 규정 도입 및 개정 시 협의 또는 동의 절차 진행 여부 (발명진흥법 15조 3항, 동법 시행령 제7조의 2, 1항)		
	직무발명에 관한 규정 15일 공표 여부 (발명진흥법 시행령 제7조의 2, 2항)		

# ○ 결과 확인 및 확인서 발급



Step3. **확인서 저장** 클릭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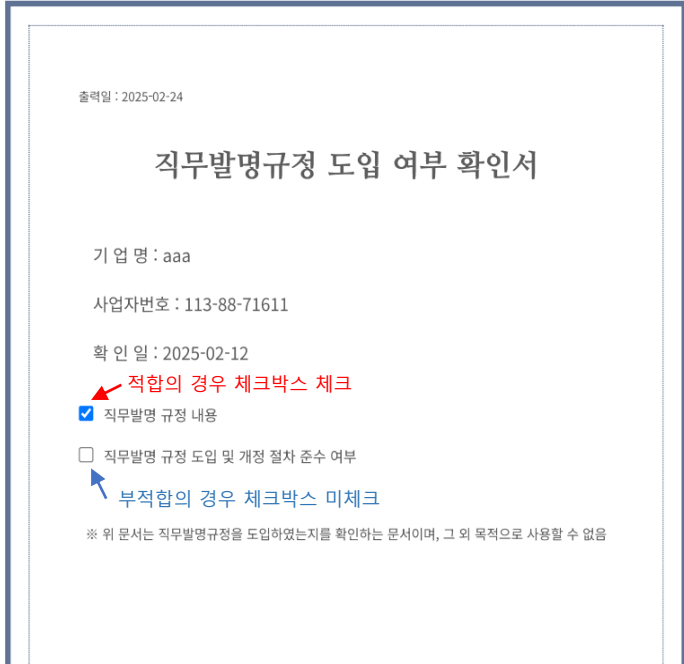
## 사업신청내역

### ■ 증명서발급관련 안내사항

- 개인정보 보호법(시행 2013.03.23)제 24조 2항(주민등록번호 처리에 제한)에 의거하여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 없는 관계로 증명서발급을 받기 위해서는 본인인증이 필요합니다. (대리인 신청 및 팀신청의 경우 접수(원본)대상자 본인인증 필요)
- 아래의 증명서 발급목적사업의 경우에만 각 접수건별 최초 1회 본인인증이 필요합니다. (아래목적외 사업은 본인인증 불필요)
- 본인인증이 필요한 신청건은 사업명 아래의 증명서 발급을 위한 본인인증 버튼이 표시됩니다.
- 버튼 클릭 후 본인인증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.

- 한국발명진흥회 증명서 발급 사이트로 바르게가기([http://www.kipa.org/kipa/service/fw\\_0706\\_01.jsp](http://www.kipa.org/kipa/service/fw_0706_01.jsp))

NO	사업명	신청일	결과	접수 단계별 상태 및 결과			서류보완
				접수상태	1차 심사결과	2차 심사결과	
46	직무발명보상제도 컨설팅	2025-02-17	접수완료				<a href="#">신청서관리</a> <a href="#">증명서 본인인증</a>
45	2025 직무발명 규정 도입여부 확인	2025-02-12	최종선정	적합			<a href="#">신청서관리</a> <a href="#">증명서 본인인증</a>



Step4. 직무발명 규정 도입 여부 **체크 항목** 확인 및 인쇄

Step1. 로그인 후 **MYKIPA** 클릭

Step2. 사업명 : 직무발명 규정 도입여부 확인의 **신청서 관리** 클릭

### 직무발명규정 도입 여부 확인제 상담

TEL.	02-3459-2844, 2793, 2847
E-MAIL.	2845@kipa.org
상담가능시간.	평일 10:00~17:30
홈페이지.	<a href="http://www.ip-job.org">www.ip-job.org</a>

## ※ 직무발명제도 규정 도입 여부 확인제 신청 관련 FAQ ※

Q1.	직무발명제도 규정 도입 여부 확인제 무엇인가요?
A1.	기업이 발명진흥법에 따라 직무발명제도 규정을 도입하고 보유하였는지 적합성을 확인할 수 있는 제도
Q2.	직무발명제도 규정 도입 여부 확인제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?
A2.	직무발명제도 규정을 보유한 중소기업, 중견기업이 신청 할 수 있습니다.
Q3.	선정 결과 부적합으로 통지를 받았습니다.
A3.	직무발명제도 규정, 도입 및 변경절차 등 2가지 항목에 대해 각 적합여부를 통지하며, 부적합 기업은 "직무발명제도 컨설팅"을 신청하시면 우선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
Q4.	신청 후 결과 발표까지는 얼마의 기간이 소요되나요?
A4.	신청완료 일 기준 최대 15일 이내 심사 완료되며 담당자에게 이메일로 결과를 통지합니다
Q5.	기존에 작성하던 신청서는 어떻게 수정하나요?
A5.	Kipa.org 로그인 후 mykipa의 신청서관리에서 수정가능하며, 신청완료된 신청서는 수정이 불가능합니다. 이미 신청완료된 신청서를 수정하시고 싶은 경우 한국발명진흥회 직무발명 담당자에게 연락바랍니다.